

2022.03.02.

대통령 선거일(3월 9일)과 사전투표일(3월 4일~5일) 노무 관리사항

1.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휴일

-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 2'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법정 휴일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비고	관리사항
대통령 선거일	- 법정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대체 활용 불가
대통령 선거일 근로제공시	-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활용

- 한편, 사전 투표일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 투표할 수 있는 날이므로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공민권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선거권 행사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7일전부터 3일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Q&A

Q1. 대통령선거일에 회사는 휴일인데 근로자가 근로일인 3월 4일 금요일(사전투표일) 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여야 하는지?

A1.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일이 휴일이라면 사전투표일 투표요청시간을 대통령 선거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해외 출장 등) 사전투표일에 청구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Q2.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고, 사전투표일 중 1일이 휴일임에도 투표하지 않아 대통령 선거일 근로시간 중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여야 하는지?

A2. 사전투표일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면, 대통령선거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공민권의 행사이므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근시간등을 조정하여 그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 . 사전투표일(3/4~3/5) 과 대통령선거일(3/9) 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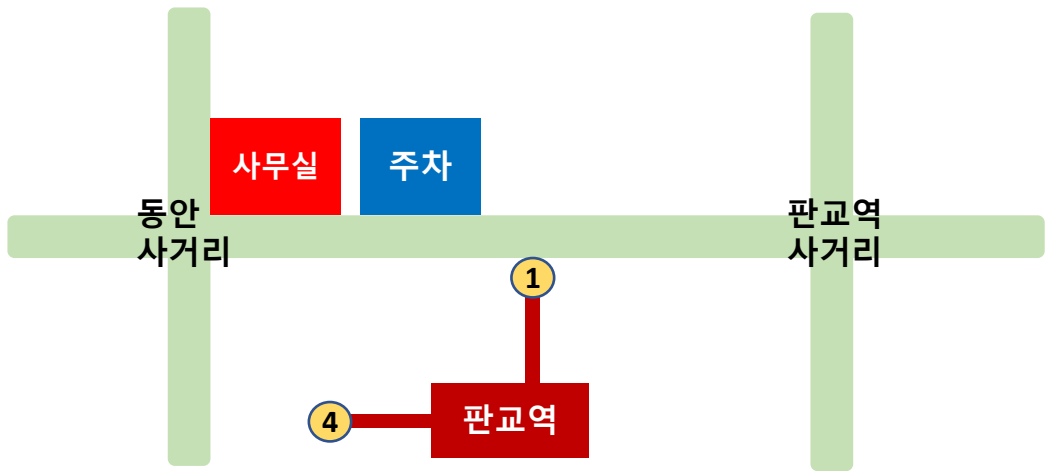
A3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Q4. 사전투표일(3/4 ~3/5)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투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격리 해제 후 투표일(3/9)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근무 시간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4. 코로나 확진자는 3/5 당일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Summary

- **(5인 이상 사업장)** 대통령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근무시 휴일 관련 규정(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보상휴가제)등이 적용됨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 **(모든 사업장)** 대통령선거일에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
- **(모든 사업장)**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하여 사전투표일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
- **(모든 사업장)** 대통령선거일에 쉬는 경우 사전투표일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허용하여야 함
- **(모든 사업장)** 대통령 선거일에 따라 선거일 7일전 부터 3일전까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daum.net

김재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안형근 공인노무사
Cpla_ahg63@naver.com